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5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9월 3일

나. 제 출 자: 강선영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0년 9월 9일

라. 상정일자: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0. 9. 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강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중 와상 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성 질병, 조호물품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질병을 말함

○ 조호물품은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를 제외한 것을 말함

3) 조호물품의 지원요건,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 물품지원 시행 전반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제6조)

4) 시행규칙의 근거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노인복지법」 제4조

나. 예산조치: 예산 편성필요 (2021년 본예산 반영)

다. 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0. 9. 4. ~ 9. 8.) 결과: 의견 있음[붙임 참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정우숙)

○ 본 제정조례안은

-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의 정의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 '노인성 질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 명시된 질병으로 하고
- "조호물품"은 기저귀, 방수포 등 노인성 질병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복지용구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의 지원요건에서 지원대상은 노인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으로 거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 질병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 안 제4조의 지원내용에서는 위 제3조의 대상에게 기저귀 등의 조호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조호물품의 신청절차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9조,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성 질병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호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며,
- 향후 물품지원사업 시행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가 필요[1]함.

○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소관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는

- 소요예산과다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8P) -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대상임

-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 붙임 의견서 참조)
- 본 조례안에서 조호물품의 종류 및 수량, 지원방법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추산한 소요예산**2)이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긴 하나 요양등급 1, 2등급 대상 중 치매가 아닌 노인도 있으므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치매안심센터의 조호물품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성질병자 조호물품 지원비교 참조
-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호물품의 종류 및 수량, 지원방법 등에 따른 소요예산과 투입되는 행정력의 수요
- 조호물품 지원에 따른 어르신 삶의 질 개선 및 복리증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성질병자 조호물품 지원비교

	치매안심센터	노인성질병자 물품지원 조례
지원대상	치매소견, 중위소득 120%이하	요양등급 1, 2등급,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물품	월 15천원 내외 조호물품 (성인용 기저귀 30매 상당)	미정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지원방법	월 1회 센터 방문수령	미정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소요예산	연간 **29,000천원** (2019년 기준) 지원대상-323명	예산범위 내

2) 대상자 235명 × 주 40매(1일 5.7매) × 52주 × 800원(택배비 포함) = 연간 약 3억 9,100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u>재가급여</u> 대상자 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합계	5,234	169	361	1,466	2,692	507	39
일반	2,431	89	206	733	1,151	224	28
기초수급	1,432	39	49	314	871	153	6
의료급여	61	0	5	12	37	7	0
경감※	1,310	41	101	407	633	123	5

※ 경감 - 의료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물품지원대상: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u>(총 235명)</u> 2020. 8월 현재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소요예산이 과다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당초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수급권자로 축소함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제2호 중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로 수정

붙임 1) 수정안 및 수정대비표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수 정 안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성 질병자 물품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른 조호물품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생 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일 것 3. ~ 5. (생 략)	제3조(지원요건) ----------. 1. (제정안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일 것 3. ~ 5. (제정안과 같음)

붙임2 관계 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3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강서구 노인성질병자 지원조례 발의 부서의견

2020. 9. 8.(화) 어르신복지과

□ 제안이유

○ 강서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중 와상상태이거나 각종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조호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임 (※. 조호물품 : 환자를 돌보는데 쓰는 물품)

□ 지원대상 (조례 제3조)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 의사소견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조호물품 필요내용 기재

□ 지원물품 (조례 제2조, 제3조)

○ 질병 노인을 돌보는 물품으로서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에 쓰이는 물품 (예 : 기저귀, 방수포, 물티슈, 방수시트 등)

○ 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는 제외

□ 예상 소요예산

○ 대상자 기저귀 지원시 :

800원* 주40매(1일5.7매)* 235명* 52주(1년) = 391백만원

(택배비 포함. 유한킴벌리 제품)

□ 실태 및 지원현황

○ 전국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조호물품 지원 사례 없음. 다만, 2019년 경남 거창군 **보건소**에서 노인성질환(치매외 뇌출혈,

뇌졸증)에 대하여 군비로 30명 11,700천원을 지원

○ 우리구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조호물품을 국비로 지원중이며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명단과 대조 결과 33%의 어르신에게 조호물품이 지원되고 있음

※ 2019년 국비 치매 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치매소견자로 중위소득 120%이하 ○ 지원기준 : 월15,000원(30매) 지원 (연18만원 상당) ○ 지원규모 : 월 323명 연 29,000천원 (국50%, 시25%, 구25%)

□ 부서의견

○ 반 대

○ 필요량 지원시 소요예산이 391백만원 예상되며 매년 대상인원이 증가하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 어려움

○ 조례(안)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요양등급 1~2등급)가 조호물품 필요시에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 가능

○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지원사업(국·시·구비)과 중복 가능성이 있고 조례제정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율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참고사항

○ 2020. 2월 본 조례안이 상임위 부결된 바 있으며

○ 본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보건복지부 심의 통과가 필요(사회보장법 제26조2항)